

##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(예정)자 안내문

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(시행사, 임대사업자) 간 “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”을 체결하여 공급되며,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주택입니다.

각각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임대차계약 및 세대를 운영·관리 하며,

‘**민간임대주택**’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청년안심주택 **사업자(시행사, 임대사업자)**가 임대차계약 및 세대를 **운영·관리** 되는 **주택입니다.**

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을 따르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, 민간임대 **입주(예정)**자들의 임대보증금 관련사고 예방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차인 필수 확인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시기 **바랍니다.**

### ●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**입주(예정)자** 임대차 계약 진행 시 확인 **필수사항**

| 필수 확인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법령 및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임대보증금 <b>보증보험</b> 가입여부          | [관련 법령, 협약 내용] <b>사업자(시행사, 임대사업자)</b> 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”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<b>사용검사, 임시사용승인</b> 또는 건축법에 따른 <b>사용승인, 임시사용승인</b> 의 <b>신청일</b> (신청일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<b>모집일</b> ) <b>이전까지</b>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<br>※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이후 임대차 <b>계약</b> 을 할 <b>경우</b> , 보증보험은 이행되지 <b>않습니다.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대항력, 우선변제권</b> 확보            | <b>대항력(점유, 전입신고)</b> 과 <b>우선변제권(확정일자)</b> 를 <b>갖춰야</b> , 임차인 <b>보호(선순위자)</b> 가 될 수 있습니다.<br>※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대항력과 <b>확정일자</b> 를 갖추지 않는 <b>경우</b> , 보증보험은 이행되지 <b>않습니다.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최우선변제권</b> 해당여부              | [관련 법령] 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, 제8조”에 따라 <b>소액임차인</b> (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<b>임차인</b> )은 <b>최우선변제권</b> (대항력 요건을 갖춘 세입자가 다른 채권보다 먼저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<b>권리</b> )을 <b>가짐</b><br>※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(*서울시): 196,500만원 이하(23.02.21~), 195,000만원 이하(21.05.11.~23.02.21.)<br>최우선변제 금액(*서울시): 5,500만원 이하(26년 현재 기준) 따라서 5,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전액 환수 가능<br>※ 대항력 요건 : 전입신고(*신고일 다음날부터 대항력 효력) |
| <b>권리관계 등 상황</b><br>(*계약일, 잔금일) | <b>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(등기부등본상)</b> 잔금일 <b>익일까지 물건지(입주단지)</b> 에 <b>임차</b> 인에게 불리한 <b>근저당설정</b> , 가압류 등 <b>권리관계변동</b> 이 없어야 하며,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<b>전</b> 에는 반드시 <b>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</b> 를 열람하여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<br>※ 계약 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상황 확인 <b>방법</b> :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직전 임대주택에 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증서 발급일과 임대차계약 시적일 사이 새로운 근저당, 가압류,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      |
| <b>원상복구</b> 계약 전                |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,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, 임차인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주택을 인도받는 즉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 <b>사진</b> 을 꼭 찍어두시기 바랍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●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**입주(예정)자** 임차인 입주 **중** 확인 **필수사항**

| 필수 확인사항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법령 및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임대차계약 진행 시 <b>누락사항 유무 확인</b> | 거주 중이더라도 위 ‘계약 진행 시 필수 확인사항’ 재점검 <b>해보기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★보증보험 미갱신 <b>확인</b> ★        | 거주 중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갱신 불가 시, 보증회사에서 통보하는 우편 내용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(HUG) 또는 전세금보장 신용보험(SGI) 임차인이 즉시 가입 |

※ **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**에서는 입주 전부터 입주 신청, 계약(갱신), 퇴거까지 정보 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서울시 **전월세지원센터** 연계를 통한 법률지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
(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 : 02-793-0765~0768,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: 02-2133-1200)

## 노량진역 청년안심주택 더써밋타워 입주자 추가 모집공고

(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74)

공공지원 민간임대

2026. 08. 20.

코레이트노량진역청년주택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

## [주택개요]

- 주택위치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74 (9호선 노량진역 4번 출구)
- 공급호수 : 총 299세대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259세대 중 금회 추가모집 공공지원민간임대 4세대  
(일반공급2세대 특별공급2세대)
- 단 지 명 : 더써밋타워
- 시행사(임대사업자) \*협약서 사업자명 : 코레이트노량진역청년주택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
- 시 공 사 : 강남건영(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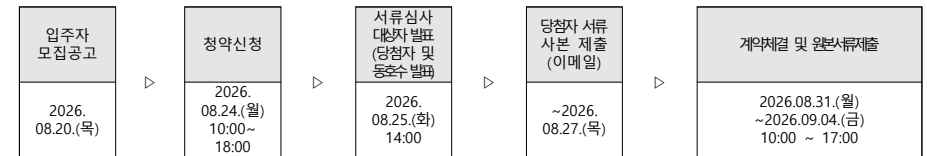
- ※ **1인 1주택형(타입)에 대해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, 중복 신청할 경우 청약이 모두 탈락 처리됩니다.**
- ※ **기존 계약자분들은 본 추가모집에 신청할 수 있으나, 신청 전 '퇴거신청서'가 사업자에 제출 확인되어야 합니다.**
- 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민간이 건설하고 공급,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.
- 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, 「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, 「서울특별시 (청년)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(청년)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등에 따라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.
- 본 주택의 입주신청자(이하 '신청자')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하여야 합니다.
-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-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(이륜차 포함)의 소유·운행이 가능합니다.  
(단, 기존 자동차가액 4,542만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에 한함)
- 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6.08.20.입니다. 이는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(예비자 연락이 늦어질 경우 판단기준일 : 사업자 연락일일 수 있음이며, 모집공고 내 모든 일정 및 일시는 한국시간 기준입니다.
- **당 단지는 사용승인 및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. (전세대 전액보증)**  
(신규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금액 등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 가입이 됩니다.)
- ※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보증보험은 이행되지 않으며,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(등기부등본상) 잔금일 익일까지 물건지(입주단지)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근저당설정, 가압류 등 권리관계변동이 없어야 합니다. (입주예정자께서는 계약 체결 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- ※ 청년안심주택 자체 근저당, 가압류 등에 의해 보증금 대출이 불가능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으나, **입주 예정께서는 계약전 반드시 대출 실행은행에 문의 바랍니다.** (확인 방법 :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직전 임대주택에 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증서 발급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 사이 새로운 근저당, 가압류,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)
- 입주예정자 개인의 사유나 설정된 근저당금액으로 일반(개인)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나, 계약체결 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단자(임대사업자) 문제로 인한 대출 불가 증빙의 책임은 입주예정자에게 있으며, 개인사유 대출 불가등 단자(임대사업자) 문제 외 사유로 인한 계약파기 시에는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 1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) **본 위약금은 입주 전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이며, 계약 개시 후 발생하는 '중도 퇴거 위약금'과는 무관합니다.**
-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보증기간 연장을 위한 보증서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료를 대신 납부하여 보증기간을 자동 연장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보증금 보증기간 만료 전 HUG( 1566-9009 )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 및 서울시와의 협약 내용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임대사업자는 이를 임대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.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, 보증수수료의 75%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, 25%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. (임대료는 보증수수료가 미포함 된 금액이므로 입주 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, 임대사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)
- ※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간 : 2024.08.30. ~ 2026.08.29. (\*종료일 : 2026.08.29.) (전세대 전액보증)
- ※ **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유효기간 이전에 갱신 예정이며, 보증보험 미갱신시 사업주는 계약해지를 원하는 입주민에게 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 예정입니다.**
- 본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,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.
- 본 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무기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.

- 본 추가공고와 최초공고(2026.02.05.)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 본 추가공고의 내용이 우선시 되며 본 추가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공고를 따릅니다.

- **금번 모집공고 호실은 호실별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(전부보증)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**
- **각 호실별 보증보험 가입 현황 및 계획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| 구분   |              | 근저당권 현황      | 임대보증금 보증금액                  | 현재 보증보험 만료일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특별공급 | 12층<br>1201호 | 232,800,000원 | 131,000,000원<br>(보증금 전액 가입) | 2026-08-29  |
|      | 21층<br>2117호 | 230,400,000원 | 170,000,000원<br>(보증금 전액 가입) |             |
|      | 23층<br>2310호 | 232,800,000원 | 168,000,000원<br>(보증금 전액 가입) |             |
| 일반공급 | 13층<br>1313호 | 198,000,000원 | 162,000,000원<br>(보증금 전액 가입) |             |

## [공급일정 및 청약]



- 입주지정기간 : 1201호 – 2026.10.19.(월)  
2310호 – 2026.10.14.(수)  
1313호 – 2026.10.13.(화)  
2117호 – 2026.10.26.(월)
- 청약 문의
  - 대표번호 : 02-823-5410, 월요일~금요일 10:00~18:00 (점심시간: 12:00~13:00)
  - 홈페이지 : <https://thesummittower.co.kr/>
  -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상담은 입주지원센터(02-823-5410)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, 청약과 관련한 유선 및 온라인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청약 신청 : 단지 홈페이지
  - 당첨자의 모든 서류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이메일(스캔본)로 제출하여야 하며,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-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 호수의 1000%(10배수)를 예비자로 선정하며, 예비순번은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됩니다. 당첨자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, 계약 후 미입주,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, **예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.**
- ※ **동일유형 타입내 예비자 호실 공유 가능**
- 본 주택에 청약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주택형(타입) 별로 1건만 가능하며, 신혼부부(예비신혼부부 포함)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(예비부부)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,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.
- **입주자 세대 확인은 계약 체결 전 진행됩니다.**

■ 유의사항 : 최초 모집공고를 따름

※ 청년안심주택 공식 홈페이지 참조 : <https://soco.seoul.go.kr/youth/main/main.do> (주택찾기 > 모집공고 > 민간 최초 > 단지명)

[공급현황]

(단위 : 만원)

| 공급<br>유형  |    | 주거<br>전용<br>(타입) | 금회<br>공급<br>호수 | 금 액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
|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보증금    | 임대료  |
| 청년/<br>신혼 | 특별 | 단층형<br>1201호     | 1              | 13,100 | 55.4 |
|           |    | 2층형<br>2117호     | 1              | 17,000 | 39.3 |
| 청년/<br>신혼 | 일반 | 2층형<br>2310호     | 1              | 16,800 | 72.4 |
|           |    | 단층형<br>1313호     | 1              | 16,200 | 68   |
| 소 계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4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
| 합 계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4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

- (최초 계약이 아닐 경우) 기존 호실의 금액으로 계약될 수 있습니다. 계약 이후 임대보증금 비율은 변경 불가합니다.
- 상기 보증금 및 임대료는 타입별 기준 금액이며, 계약하실 호실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.  
※ 계약 호실별 보증금 및 임대료 금액 계약 체결 전 상세 안내 예정

[신청자격 및 제출서류]

-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6.08.20. 입니다. 이는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(예비자 연락이 늦어질 경우 판단기준일은 사업자 연락일일 수 있음)이며,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. 본 인 인증 필수 ※ 모집공고 내 모든 일정 및 일시는 한국시간 기준입니다.
- 본 주택의 입주신청자(이하 '신청자')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.
-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이 주택은 청약자(당첨자)와 및 계약자, 입주자(전입자)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. \*신혼부부형의 경우, 청약자(당첨자) 명의로 계약 체결(공동명의 계약 불가)
-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(이륜차 포함)의 소유·운행이 가능합니다. (단, 세대 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)  
- 자동차가액 기준 : “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” 준용

- 그 외 신청자격 최초 모집공고 내용을 따름. 단, 소득 및 자산, 자동차가액 기준은 최신 기준을 따름  
• 소득기준 – 청약 시 아래의 소득 기준에 따라 정확한 순위 선택 필요

(청약 시 선택한 소득 수준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)

-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

[단위 : 원]

| 순 위 |      | 1인 가구     | 2인 가구     | 3인 가구     | 4인 가구      | 5인 가구      |
|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순위 | 100% | 3,813,363 | 5,866,270 | 8,168,429 | 8,802,202  | 9,326,985  |
| 2순위 | 110% | 4,194,699 | 6,452,897 | 8,985,272 | 9,682,422  | 10,259,684 |
| 3순위 | 120% | 4,576,036 | 7,039,524 | 9,802,115 | 10,562,642 | 11,192,382 |

※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(579,278원)을 합산하여 산정

※ 1인당 평균금액=(5인가구 월평균소득-3인가구 월평균소득) / 2

• 지역기준 – 동일 소득일 경우 지역 순위 적용

| 순 위 | 지 역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순위 | 서울특별시 동작구 | 거주자 : 주민등록상 주소지<br>대 학 : 소재지 내 대학의 재적증명서<br>직 장 : 소재지 내 직장의 재직증명서 |
| 2순위 | 서울특별시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순위 | 그 외 지역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자동차 가액기준 – 차량을 소유하지 않거나, 아래 가액보다 적은 가액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만 청약가능

| 자동차가액   |
|---------|
| 4,542만원 |

• 자산기준

| 청 년             | (예비)신혼부부     | 비 고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
| 30~39세 가구 기준 적용 | 소득 3분위 기준 적용 |          |
| 251             | 345          | 단위 : 백만원 |

※ 청년안심주택 청년(본인) 자산 기준은 30~39세 가구 금액을 따름

※ 청년안심주택 (예비)신혼부부 (구성될)세대 자산 기준은 소득 3분위 금액을 따름

■ 공급 유형별 제출서류 별첨

※ "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"과 "등록(사용) 자동차가액 판단"의 차이

-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 : 기준 가액 이하
- 등록(사용) 자동차가액 판단 : 기준 가액 이하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(단, 등록(사용) 할 자동차가액 판단 시 지분 소유는 미인정. 등록(사용) 할 자동차 전체 자동차가액으로만 판단)

[당첨자발표]

■ 단지 홈페이지 2026.08.25. (화) 14:00

- 당첨자 : 당첨자 발표 시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동·호수를 무작위로 배정하여 함께 발표합니다.
- 예비당첨자 :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사업주체가 정한 방식에 의해 순차 진행되며,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.  
※ 2회이상 연락 불가 또는 계약체결일에 미 계약시 자동 당첨 취소되며, 예비 당첨자에게 순번대로 개별통보

[별첨]

■ 공급 유형별 제출서류 (최신)

-특별공급 제출 서류 \*모집공고 이후 발행분

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급처                       | 유의사항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.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 면허증 中 택1)<br>※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<br>※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<br>※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증명서류 추가제출 | 행정복지센터, 구청, 시청, 정부24(인터넷) |      |
| 2. 주민등록등본 (세대구성정보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)<br>※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"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"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3. 주민등록초본 (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전체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4.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5. 혼인관계증명서 (신청자 본인 기준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<br>※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※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자 홈페이지에서<br>양식 다운로드     |      |
| ※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"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" 추가<br>(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※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6. 월평균 소득(해당 세대원(인원) 전체) 및 자산 현황 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7. 공급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8. 서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*전전년도~해당년도)<br>(세목전체 / 과세·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)<br>(서울시 내역 1부, 전국 내역 1부)<br>※ 무주택/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 및 자산 확인<br>- 청년 : 본인만 출력 제출<br>- 신혼부부 :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<br>- 예비신혼부부 :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<br>※ “과세내역 없음” 인 경우도 발급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정복지센터,<br>구청, 시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직접 방문하여<br>발급<br>- 공공주택 입주자<br>자산기준(공공주택<br>입주자 보유자산<br>관련 업무처리기준<br>(현행행정규칙))<br>준용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소득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.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(해당 세대원 전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. 월평균 소득현황 확인서(해당 세대원 전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홈페이지에서 양식<br>다운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. 소득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무소득자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실증명<br>(신고사실없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근로자         |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<br>(재직증명서 포함)         | 해당 직장, 세무서,<br>홈택스(인터넷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소득여부 확인 후<br>해당 항목 택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신규취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<br>(재직증명서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직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모집공고일 이후<br>세대가 변동된<br>경우 모집공고일<br>기준 세대구성원의<br>월평균 소득현황<br>제출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개인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<br>(사업자등록증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신규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,<br>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<br>(사업자등록증 포함)                   | 국민연금관리공단,<br>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법인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<br>(사업자등록증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산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4.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<br>-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[내계좌 한눈에]에서 본인명의<br>(금융, 주식, 보험 등 전체) 발급 후 작성<br>-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본인명의(대출 전체)<br>발급 후 작성<br>※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첨부<br>- 전체 내역(각각의 상세내역 전체)<br>※ 신용정보조회서 첨부<br>- 전체 내역(각각의 상세내역 전체)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자 홈페이지에서<br>양식 다운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동산 및<br>자동차등의 자산<br>자료는 제출하신<br>지방세세목별과세<br>증명서로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금융결제원(인터넷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주거래 은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.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(사본, 해당자만 제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현재 거주하고 있는<br>주택이 전·월세인 경우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. [자동차 소유자] 자동차(이륜차 포함) 가액 증명 자료<br>※ 자동차등록원부, 자동차등록증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보험개발원 홈페이지<br>또는 복지로 포털,<br>정부24(인터넷) | 공공주택 입주자<br>자산기준(공공주택<br>입주자 보유자산<br>관련 업무처리기준<br>(현행행정규칙)) 준용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7. [입주 자격] 자동차(이륜차 포함) 가액 증명 자료<br>※ 자동차등록원부, 자동차등록증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8. 지역 기준 순위 대학 및 직장 소재지로 할 경우<br>- 대학 : 재직증명서<br>- 직장 : 재직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직증명서 : 대학<br>재직증명서 : 직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9.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★전입신고 후 등본(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) 추가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★입주 당일 전입<br>신고를 한 후<br>(입주 후 7일<br>이내 제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(해당자에 한함) 무소득자 확인각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자 홈페이지에서<br>양식 다운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(해당자에 한함) 비사업자 확인각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자 홈페이지에서<br>양식 다운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추가,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(주택 및 분양권 소유 등 확인용) : 청약홈 ([www.applyhome.co.kr](http://www.applyhome.co.kr))  
 ※ 프리랜서인 경우 소득 자료 :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소득금액증명원, 종합소득세 미신고자는 계약서  
 ※ 소득 자료 기타 예외 사항 : 공공지원기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[별표6] 참조

#### - 일반공급 제출서류 \*모집공고 이후 발행분

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급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 면허증 中 택1)<br>※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<br>※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<br>※ <b>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증빙서류 추가제출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정복지센터,<br>구청, 시청,<br>정부24(인터넷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주민등록등본 (세대구성정보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)<br>※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“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”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혼인관계증명서 (신청자 본인 기준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<br>※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<br>※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“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” 추가 (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공급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서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* <b>전전년도~해당년도</b> )<br>(세목전체 / 과세·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)<br>(서울시 내역 1부, 전국 내역 1부)<br>※ 무주택/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 확인<br>- 청년 : 본인만 출력 제출<br>- 신혼부부 :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<br>- 예비신혼부부 :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<br>※ “과세내역 없음” 인 경우도 발급 | 행정복지센터,<br>구청, 시청               | - 직접 방문하여 발급<br>-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(현행행정규칙)) 준용 |
| 9. [입주 자격] 자동차(이륜차 포함) 가액 증명 자료<br>※ 자동차등록원부, 자동차등록증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, 정부24(인터넷) |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(현행행정규칙)) 준용                   |
| 10.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★전입신고 후 등본(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) 추가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★입주 당일 전입 신고를 한 후 (입주 후 7일 이내 제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추가,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(주택 및 분양권 소유 등 확인용) : 청약홈 ([www.applyhome.co.kr](http://www.applyhome.co.kr))